

의안번호	2219848
의 퇴 인	이수진의원
회 답 일	2026.9.3.
추계번호	26C3406
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1조제1항 (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	-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 사의 장기근속 유도, 이직 방지,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·광역시· 도·특별자치도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음 7.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 해 회복 지원(신설)	재량규정
2	안 제37조제1항 (실태조사)	-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,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6.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“그 대응”에 관 한 사항 - <u>인권침해 실태의 대응</u>에 관한 사항 추가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1조제1항 (간호인력 지원센터 의 설치 및 운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 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7조제1항 (실태조사)	

2. 상세 사유

□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(안 제31조제1항)

- 개정안은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“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”을 추가하는 것으로, 사업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, 사업 규모 및 수행 방식 등이 전제되어야 하나, 현행법은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(법 제31조제4항)하고 있고 해당 사항이 아직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가정에 한계가 있음
 - － 현재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에 간호인력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,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기존 업무는 간호인력의 취업안정과 인력 수급 개선에 집중되어 있음
 - － 또한, 2023년까지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7개소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조직 컨설팅을 제공한 바 있으나, 이는 인사제도 및 근로조건 설계, 채용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의 유사사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

□ 실태조사(안 제37조제1항)

-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행하는 실태조사에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, 조사 항목 확대에 따른 조사비 및 연구용역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소요 수준이 전제된 후 개정안에 따른 증가분을 산정하여야 하나, 법 제37조제1항¹⁾에 따른 실태조사는 2025년 6월 21일 법 시행 이후 아직 실시된 바 없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적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

1) 제37조(실태조사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, 이를 중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1. 간호사등의 수급 변화에 관한 사항
 - 2. 보건의료기관별·직종별·지역별 간호사등의 현황 및 업무 실태에 관한 사항
 - 3. 간호사등의 근무시간, 근무형태, 이직률, 직업 만족도 등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
 - 4. 간호사등의 임금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
 - 5. 간호사등에 대한 교육·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
 - 6.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일·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
 - 7. 그 밖에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보건복지부는 2027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나, 이는 현행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조사항목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 항목의 소요를 분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또한 추가재정소요는 조사 방법 및 수행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은 현지조사, 서면조사, 전화,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가정이 곤란함
 - 아울러 현행법은 이미 “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”를 조사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, 개정안에 따라 ‘대응’에 대한 사항이 추가될 경우 별도의 조사 자원이 소요될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